

第269回國會 政治關係法特別委員會會議錄 第 8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7年10月2日(火)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4. 간사선임

審査된案件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
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

(16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상배 오늘 위원장이 예고해 드린 대로 3시에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마는, 좀 늦었습니다. 그동안 협의를 좀 하느라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7월 5일 이후 우리 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안건 150여 건에 대해서 17회에 걸친 소위원회 활동과 또 일곱 번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금 전 2시까지도 열심히 활동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 결과로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위주로 심사를 해서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직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포털사이트에 대한 공정의무 부과 또 허위사실 공표금지 등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점에 회의에 참석해서 심의를 해야 할 위원들께서 참석하지 않아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왔습니다.

지난 9월 17일, 18일 이틀간에 걸쳐서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각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고받고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위원들만 참석을 해서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두 달 남짓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관련 사안들을 하루라도 빨리 시급히 처리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대통령선거 관련 정치관계법 개정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선거의 공정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처리를 언제까지나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저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선거 관련 사안의 시급성과 또 중요성 그리고 일정 등을 감안해서 부득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여야 간에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20건 또 정당법 및 정

치자금법 7건, 모두 27건을 기본으로 조문 정리한 각각의 개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제1소위원회 합의사항, 정당…… 이것까지 다 하나? 소위원회 합의사항까지만……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6시09분)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소위 위원장으로 활약하신 안경률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률 위원 공직선거법제1소위원회 안경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지병문 위원, 최규성 위원, 정성호 위원, 장윤석 위원, 주성영 위원, 최인기 위원이 참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1건의 법률안과 주성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2007년 7월 23일부터 2007년 9월 17일에 이르기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전체회의의 대체 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질의 사항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민주노동당의 개정의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 및 관련 청원에 대하여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직선거법제1소위원회의 합의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안 등 81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주노동당의 개정의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에 대하여 유사한 주제별로 분류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 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 40일 전 첫 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해당 정당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개표의 정확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기간행물 이외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도 조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소수정예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선거부정감시단 활동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다섯째,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합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소위원회는 배기선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38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이인영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4건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그리고 김충환 의원이 소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청원 1건 등 총 43건의 회부된 법률안 등과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하여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선병렬 위원, 이인영 위원, 그리고 윤호중 위원, 한나라당의 김정훈 위원, 나경원 위원, 박세환 위원, 민주노동당에서 이영순 위원이 참석하고 선관위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7월 25일부터 총 아홉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배기선 의

원안, 박기춘 의원안 등의 의원발의안과 관련된 선관위의 개정의견을 포함하여 주제별로 총 15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선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매니페스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공약집, 후보자 선거공약서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홍보, 정책 등에 관한 사항과 다른 후보자 등의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게재 면수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여 균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언론기관 등은 공정한 방법으로 후보자 등의 공약이나 정책 등을 비교·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 후보 등에 불리 또는 유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순위를 부여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도서 형태로 발행되는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정당의 정책공약집은 서점 등을 통한 통상적인 방법으로만 판매를 허용하되 정당의 정책공약집은 동법에 근거한 연결원이 개최한 연결·대담 등 공개 장소에서와 정당의 당사에서 별도의 판매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와 사전 합의 하에 선거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배우자 및 선거관계자 등이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5인 이내에서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구성된 지역구의 경우 구·시·군마다 5인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되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선거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2인의 선거연설원 외에 10인 이내의 전국 연설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기부행위를 받은 자가 기부 받은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납하고 자수한 경우 50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다섯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선거범죄에 대한 허위 신고를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당법·정치자금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안 등 여덟 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등 열네 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등에 대한 합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당법·정치자금법소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6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양형일 위원을 포함하여 김기현 위원, 민병두 위원, 정진석 위원, 정진섭 위원이 참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실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관의 의견을 듣는 등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합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안 등 여덟 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의견 등을 통합·성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당 활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 수를 대통령선거에 한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중앙당은 150명까지, 시·도당은 총 150명까지 각각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민주적 의사 결정과 공정한 경선을 통한 합리적 정당 운영과 당내 민주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은 그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합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등 열네 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의견 등을 통합·성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사용 보장을 위하여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당의 운영과 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계상 시 계상단가는 현 계상단가(800원)에서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치자금기부 영수증 발급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소액의 정치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안경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상배** 우리 박세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 대체토론 시간입니다만 잠깐 그 전에 좀 언급을 하고 갈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모두 한결 같이 이 자리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의사가 소통이 돼서 다 의사를 통한 후에 이 자리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의원 정수를 조정해 달라는 것도 표면에 내세우고 있고, 또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 지금 신당에서 아주 바쁜 경선 일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정말 이 국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범여권 당으로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관계특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당에서 표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원 정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기왕에 의원 정수가 조정할 만한 어떤 계기가 일어나기 전에 기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처리를 한 후에 의원 정수 조정을 하고 그 후에 그에 따라서 충분히 여야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얼마든지 이 정치관계특위를 이끌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수긍할 수 없는 의원 정수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치관계특위의 운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국민과 함께 정말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경선도 보면 오늘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다라는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차떼기니, 버스떼기니 이런 국민적인 비난이 일던 끝에 결국은 중단되고 그랬으면 그걸 핑계로도 이 회의에 불출석할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하나같이 불출석한 것은 너무나 유감이고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는 계속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최소한도 범여권 민주당에서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기타 나머지 당과 잘 연락을 하셔서 기왕에 합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요, 사무총장님 제가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합의된 내용 중에 조금 문제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무슨 권한을 준다든지 조직에 관한 어떤 법을 만든다든지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박세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정치관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안한 것 법률안을 보면,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3번 주요 내용에 나면 같은 것 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한다” 이런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박세환 위원 이거 선거법에다 뒤야 될 사항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법에다가 규정해야 될 사항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각 개별법에서 이러한 촉진 활동·홍보 활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서, 더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마 넣은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 글썄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선관위만 규율 대상이 되는 거 아니예요? 선거 관련자들이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홍보이기 때문에 그런 규율 대상으로서의……

○박세환 위원 그러면 저는 선거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와의 어떤 활발한 의견 개진 이런 것이 필요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그런 관계,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런 국가기관은 소극적으로 정말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그런 정신을 죽 이어받는다면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은 공직선거법에다 뒤야 될 사항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이나 뭐 이런 데다 뒤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가 다,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라항이라든지 말입니다. “부정선거감시단을 둔다” 또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도 다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잘 고치면 되지 않겠어요? 법제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실장 이종우 기본적으로 선거부정감시단은 지금 한시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150일 동안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선감단 운영하면서의 소위 순기능보다 역기능도 있고 이래서, 전문성도 강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소수 정예화하면서 전문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박세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일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배일도 위원 안경률 간사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죽 듣다 보니까 여야 소위원회별로 간사 간에 합의가 되어 있고 이 합의는 기존의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단히 시급한, 시기가 경과되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내용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내용 속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시의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여야 소위원회별로 합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는 의사정족수인 5분의 1 이상의 위원님들은 참석을 했습니다만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지금 현재 참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죽 세어 보니까 20명 중에 10명인데요.

이런 상태를 묵과하고 직권으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심의를 들어가는 건 사실상 합의가, 의결을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의결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누가 어떤 형식으로 왜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는지 그 원인을 저는 명확히 규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한 이후에 위원회의 내용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는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회의가 이렇게 되기까지 교섭단체 간의 협의는 몇 차례 있었으며 또 어떻게 진행됐는데 어떻게 거부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저는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장께서 회의의 실질적 개최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금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을 했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저는 국민에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후에 이와 같은 사태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저는 참석자들이 불참한 전체 위원에게 촉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의안을 내주고, 그 결의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비상조치를 국회의장에게 법에 따라서 요구를 해서 더 이상 시기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정치관계법이 다뤄지지 않은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 정당의 실패는 그냥 다른 정당이 또 태어나서 다시 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그런 정치 일정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포기는 결국 국가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정당의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국가에 대한 직무유기이자 국가 전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이런 사태를 저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다든지 그런 사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전제로 한 촉구 결의를 이 자리에서 할 것을 제안드리고 내용에 대한 축조 심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배일도 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위원장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김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지금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불법파업 행위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자신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법파업을 서슴지 않는 행위야말로 적극적으로 제지되어지고 지양되어지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직무유기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소속원이기에 앞서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법안의 심사와 그 법안의 의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안 심사,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들의 행위는 국회 운영의 관례를 무시하는, 관행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합의된 사항은 처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그동안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지금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된 사항을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의해 놓고 돌아서서 그 합의사항을 번복하려 하거나 또 다르게 하려 하거나 취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국회 운영의 관행과 오랜 전통을 무시한 행위로서 반드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후보 유고시 선거 연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가 테러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처리를 하지 않겠다. 그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테러를 방임하거나 혹은 조장하는, 오히려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수개표의 원칙에다가 전자·기계장치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다 이미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정치관계법의 시급성, 빨리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 적용될 수 없다는 그런 시급성을 고려해서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내일이 휴일입니다마는 내일 다음날이 10월 4일이예요. 특위를 소집하여 주셔서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님들의 참여를 적극 촉구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 특위에서 이 정치관계법이 의결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주성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우리 위원회가 파행으로 가는 것은 다른 국회 의사일정에서 파행으로 가는 내용하고 다른 점이 오늘 직권 상정한 이 27개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도 지금 옹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자 경선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27개 항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다 합의를 해서 방망이까지 두드렸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그러다가 지금 선관위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게 시한이 며칠까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10월 14일까지입니다.

○**주성영 위원** 10월 14일까지, 그러니까 9월 15일 위탁받아서 한 달 이내로 해서 10월 14일까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주성영 위원** 지난번에 한나라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바일 내지는 휴대폰 투표가 합법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질문낸 적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주성영 위원** 그래서 결론 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답변 올렸습니다.

○**주성영 위원** 답변이 어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선관위에다가 위탁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정당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성영 위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부분은 질의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바일 투표를 위탁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였고 저희 답변은 “그 부분은 공정성이라든지 대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을 받을 수가 없고 정당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성영 위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가 듣기로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따위 경선을 위탁받아서 하느냐?”, 사실을 모르시니까, 이런 항의 전화가 온다는 데 사실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런 항의를 일부 받았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런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내가 얘기 들었어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기간 내에 위탁받아서 관리를 해 주는 거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주성영 위원** 우리 국민들이 알기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따위 선거를 맡이지 위탁받아서 하느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국민은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렇지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오해 살만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 자료 등을 내서 한계가, 법에서 정해진 부분과 정당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성영 위원**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신당에서 각 도로 순회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구비례가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런 데 맞지 않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아요? 인구 정수에 맞지 않고 뭐 연령이나 이런 데……

우리 한나라당이 경선 위탁한 적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이 한 예에 비추어서 과연 헌법이 정하는 보통선거나 선거의 일반원칙에 맞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볼 때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겠는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최근에 통합신당에서 선거 경선 결과를 이틀 중단한다, 또 저쪽에서는 일주일 연기해 달라, 그러면 14일까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위탁을

돌려주고, 취소하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일단 법상 투개표 관리를 30일 내에 위탁관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14일까지는 위탁된 부분이 관리가 될 수 있으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성영 위원** 14일까지 못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나머지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14일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이후에 연기되는 것을 선관위에서 관리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주성영 위원** 여하튼 이번 통합신당의 경선 위탁받은 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쌓아 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 데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을 위탁받아 가지고 오물을 뒤집어쓰는 데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한 사무총장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국민들은 선거하니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당 내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우리 중앙선관위가 있는데 그 부분에 혼돈이 있어서, 아마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각종 안내 자료를 통해서 우리의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정당의 경선에서 투표 및 개표 관리만 법에서 위탁을 받도록 되어 있지 그 외의 부분은 정당이 자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걱정하신 선관위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런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적극 해명하고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위원장님, 저도 조금만……

○**위원장 이상배** 주성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김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한나라당 김정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합의된 법들이라든지 각 소위에서 다루고 있는 법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보실 때 이번 대통령선거에 이 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될 마감 시한이, 최종 기한을 언제로 보십니까? 공포기간 같은 것도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총장의 판단은,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1년 전쯤에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리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사실 저희 선관위에서 최대한 기대하기는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해 왔는데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처리를 안 하면 이번 대선에 적용시키지 못할, 지금 거론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제외국민투표권 부여하는 것, 이런 것은 지금 본회의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물리적으로 관리가, 대선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정훈 위원** 지금 통과시켜서는 어렵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글썄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짚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현재 합의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이라도 통과가 되면 대선부터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안들로 많이 합의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통과를 안 시키면 이번 대선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글썄, 저희로서는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도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의 실명 확인 방법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UCC와 관련해서 무리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통과가 돼서 방안이 확정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만 이렇게 회의하는 것도 지금 몇 차례를 하고 있고 또 계속 이렇게 해야 될 분위기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무슨 가출한 사람들을 신문광고에 집으로 돌아오라는 광고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요구하는 위원 정수 조정에 관한 것, 또 자기들이 흩어졌다가 또다시 뭉쳐서 자기들의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위원 정수를 조정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

는데 원하는 위원 정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번 대선에,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도 빨리 시급히 개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논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중심당 또 민주당, 민노당 위원님들께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불출석하지 마시고 빨리, 지금 민노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라든지 모금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대통합민주신당이 자기들 경선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또 재외국민투표권을 도입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보이콧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합민주신당은 신당대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중심당, 민주당, 민노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을 하셔서 우리가 국민들을 바라보고 이번에 정말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데 머리를 맞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했어요.

정진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합의된 내용조차도 처리를 기피하기 위해서 불참하고 있는 여당의 위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것을 소위에 묶어 두고 있고 피일차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언제든 합의가 이루어져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조문 정리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놓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3소위에 속해 있어서 1소위 상황을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제시된 안 중에서 196조의 2(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사망에 따른 선거일 연기 등)에 관련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문 정리된 내용에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여론조사의 1,

2위 후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의 후보’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 총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모바일투표가 투표냐, 여론조사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린 바가 있고 거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의뢰한 정당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의 위탁을 받아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 선거에 주는 영향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모바일투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실제로 시행됨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라고 할까, 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정리를 해 줘야 앞으로 우리 선거의 발전이 되행하는 것을 막아낼 수도 있고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모바일투표에 대해서 잘 지켜보시고 문제점 및 장점,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국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의견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께는 그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다 하셨습니까?

다른 의견……

장윤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張倫碩 委員 오늘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1시간 가량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집하고 또 오지 않으면 그냥 참석한 위원들만 이렇게 토의하고 또 폐회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혹시 뭐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지 위원장님께서…… 민병두 위원이 간사인 것 같구만요, 그전에는 윤호중 위원이 간사였는데. 위원장님께서 민병두 위원을 좀 소환

하셔 가지고 간사로서의 직책도 좀 성실히 하도록 경고도 해 주시고, 보니까 선병렬 위원, 양형일 위원, 윤호중 위원, 이인영 위원, 정성호 위원, 지병문 위원, 최규성 위원까지가 대통합민주신당인 것 같습니다.

듣건대 정수 조정 문제를 구실로 해서—사실은 그것은 구실이고 다른 정략적인 뜻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렇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노동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중심당 위원들은 사실 왜 불참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략에 호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각 당내에 사정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좀더 이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좀 경고도 해 주셔서 이다음 전체회의에는 꼭 참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무총장이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의 권한이 정당의 경선이나 이런 당내 행사와 관련해서 투개표만 위탁받아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당내 경선 선거운동 중에서 홍보물 발송 업무하고 그 다음에 투개표 관리 그렇게……

○張倫碩 委員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위탁받은 투개표 외에도 공직선거,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가 아니라도 당내 경선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법이라든지 또는 합법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행위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선관위로서 조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고도 하고, 또 그 불법이 도를 넘는 경우에는 고발을 한다든지, 또 선관위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런데 문제는 모바일투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관위로 보면 이게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張倫碩 委員 아니, 합법적인 선거라면 위탁을

받아서 위탁관리를 해야지요. 그 위탁을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 테두리 또 헌법의 어떤 선거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지금 위탁을 못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로서는 공정성 담보를 선관위가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張倫碩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공정성 담보가 되지 않는다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흠이지요.

그러면 지금 선관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이지 못한, 또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당내 경선을 위탁하는 정당이 사실은 문제지만 그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아, 이것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관리만 거부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와 같은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그런 모바일투표는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또 실제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어서 그런지 또 집권세력이어서 그런지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방법은 지금 정당의 자율에 속한 부분에서, 다만 지금 당규에 정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

○張倫碩 委員 아니, 정당의 자유가 국민의 헌법적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도 보십시오.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때는 해산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이 헌법 원칙을 위반하는 선거를 강행한다면 사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거예요. 선관위는 바로 정당의 해산 문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헌법 보세요. 정당의 설립과 자유는 보장이 되지요.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보장이 되고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정당이 선거의 기본원칙, 자유민주 질서의 기본원칙을 해치는 선거행태를 강행하려고 하면 선관위가 나서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강행한다면 제 생각에는 선관위가 정당의 해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말씀에 저희 선관위가 공정성 때문에 위탁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선관위의 관리 능력과 범위

를 벗어난, 우리 선관위의 능력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기가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저희가 한 거고요

○**張倫碩 委員**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부분이 헌법에 위배됐다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張倫碩 委員** 한번 보세요. 헌법 제8조를 보십시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그다음에 제4항을 보세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하는데 지금 경선과정에서 헌법상의 선거의 기본원칙을 침해하는 모바일투표를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러나 그것이 헌법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좀 판단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張倫碩 委員** 물론 해야지요. 그것을 하란 말이에요. 하시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러면 지금 특정 정당의 모바일 투표의 강행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 하셔서 이다음 전체회의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보고해 주시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검토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배일도 위원** 아까 축구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상배** 아니, 축구보다도요……

이 항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더 없으시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없으십니까?

○**박세환 위원** 2항도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2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3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주성영 위원** 마찬가지로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역시 마찬가지로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워져서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더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이 회의가 소위원회에서, 1소위는 9월 10일, 2소위는 9월 13일, 3소위는 9월 11일까지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해 가지고 27개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고 따라서 본 전체회의도 몇 차례 소집을 했습시다마는 파행 운영이 되어 왔습시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외적 요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지난 7월 3일에 3당—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치관계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한나라당 9인, 열린우리당 5인, 중도통합민주당 2인, 비교섭단체 4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당 간의 통합으로 인해서 지금은 대통합민주신당이 국회에서 제1당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 20인 안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제1당이 돼야 되겠다, 이 특위에서도 같이 적용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수 변경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 변경 사항은 방금 7월 3일의 합의사항에서도 있었던 바와 같이 대표 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20인에서 더 늘리거나 또는 현재 20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고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일인데, 지금 그런 점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나라당 대표, 우리 간사인 안경률 위원께서도 또 안경률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도 대표에게 대표 간의 교섭을 성실히 해 달

라고 주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의 내적 요인은, 이것은 제가 짐작을 합니다마는 지금 27개 합의사항 중에서 한두 건 어떻게 조금 다른 의견이, 합의 이후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특히 간사 위원이신 안경률 위원께서 이쪽 대통합민주당 간사하고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9시 반에 양당 간사 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상 윤호중 위원이 간사 일을 보고 있는데 지금 대통합민주당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원 참석해서 회의가 원활히 운영된 일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간사 선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깐 여기 오늘 출석하신 위원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현재 사실상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윤호중 위원과 계속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위원장도 여러 가지로 능력이 모자라서 위원회가 파행 운영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더 양당 간의, 교섭단체 간의 원만한 협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합의된 사항들 가운데 그 내용을 깊이 보지 않으면 조금 오해할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행법에 등록기간 중 또는 등록기간이 지나, 대통령선거의 후보 등록기간 중 또는 등록기간이 지난 5일까지는 유고를 하면 추가등록이 가능한데 6일부터 24일, 선거일 전날까지는 아무런 그제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추가등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추가등록이 선거일 전일 같으면 어려우니까 선거일을 연기한다든가, 연기를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서로 양당 원내대표나 우리 특별위원회 대표끼리 좀 원만하게 잘 협의하면 별문제가 없이 결론이 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선거관리위원회 나와 계시지

만 현재 지금 기계 사용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선거법 178조와 또 선관위 관련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장 이상배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한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 하던 방법으로 하고 기계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합의된 사항이. 그러니까 좀더 이것을 합의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양당 간에, 또 다른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하면 충분히 원만한, 오해 없이 이해가 이루어질 걸로,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정치적 용어로 서로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를 해 주시고, 오늘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바쁘신 가운데 전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총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정말 다른 일도 바쁘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경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배 예, 안경률 위원 말씀이 계시면……

○안경률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개특위가 시작되고 제일 첫 번째 재외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여권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회의 불참을 해 왔고, 지금은 대통령후보 사망 시에 개선안을 마련하자 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보건대는 거의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간사끼리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소집해서 저분들이 회의장에 빨리 나와서 화급을 다투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정당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적어도 10월 8일에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시급히 소집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위원장 이상배 다음 회의는 간사 간에 좀 합의가 이루어져서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의는 또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기현	김정훈	박세환	배일도
안경률	이상배	장윤석	정진섭
주성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전문위원	백환기

○정부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영식
법제실장	이종우

【보고사항】

○의안 회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선병렬·신명·홍미영·김영춘·유재건·장영달·송영길·양승조·우제창·김동철·이화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백원우·김종률·김형주·서갑원·선병렬·신명·양승조·윤호중·이경숙·이광재·이미경·이석현·정의용·최재성·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7일 회부됨